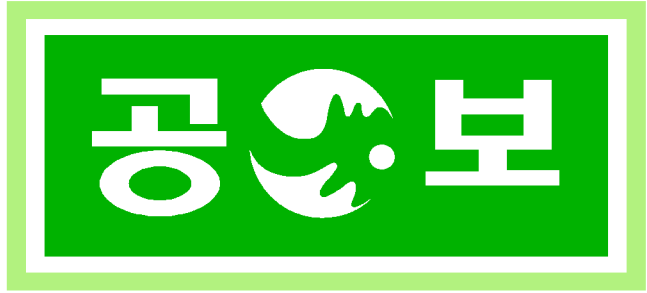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**제 891 호 2014. 6. 2(월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94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95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3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521호[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공인 등록 공고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524호[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] ..6

<b>안 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<span style="font-size: small;">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</span> </li> </ul>
----------------	--

<b>회 관</b>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**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94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6월 2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4. 5.23.	2014 - 10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북구청장	북구 산하동 367-16번지 일원 지선	18.0	2014.5.23. ~ 2029.5.22.	야외샤워시설 설치	조건부 허 가
2014. 5.23.	2014 - 11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길20 101동 501호	김종식	북구 구유동 34-1번지 일원 지선	210.0	2014.6.1. ~ 2019.5.31.	단독주택 진입로 이용	조건부 허 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95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모듈화산업로 8-11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 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6. 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이 가조 고부사 기재된 주소로 한다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화문동 1004	울산광역시 북구 모동화산입로 8-11(화문동)	2014-06-02	모동화산입로내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명촌지구 388 4-1L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15길 12-5(신장동)	2014-06-02	옛지명(머헨재)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앞산시미이면누구나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815, 816, 814-2, 818-1, 818-3, 999-1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68(신현동)	2014-06-02	옛지명(머헨재)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4	울산광역시 북구 화남동 1163-9	울산광역시 북구 인기번들길 110-19(화남동)	2014-06-02	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1-3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13(호계동)	2014-06-02	기존의 명칭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영관보호광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6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24-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905-10(당사동)	2014-06-02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7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4-12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81-9(신명동)	2014-06-02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521호

# 공 고
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9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

-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: 2014년 6월 1일
- 등록 사유: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관리운영업무 수탁기관 직인 등록
- 등록 공인

공 인 명	규 격(cm)	서 체	비고
울산광역시북구 예술창작소장인	2.0×2.0	한글전서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524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년 6월 2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#### 1. 개정이유

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소하천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반환 기준 조정 (안 제7조)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안전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할 곳
  - 주소: 우)683-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, 북구청) 안전건설과
  - 전화: 052-241-7887
  - FAX: 052-241-7869
-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담당자: 장다인
  - 전 화: 052-241-7887
  - 이메일: dain1040@korea.kr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, 모래,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(부칙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